

건설업체의 사회보험료 확보 여건 조성 시급

- 사업주·근로자 win-win의 방안 모색, 충분한 계상과 사후 정산이 관건 -



사회보험료 확보란 건설업체가 공사 수행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현재 국가계약법령 중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제18조 제5항 제10호'에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국가계약법령에 사회보험료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배려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부 사회보험의 일용 근로자 적용 제외 규정과 비정상적인 낙찰률로 인해 건설업체는 사회보험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이 피보험자 권리를 기피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라는 사회보험료 반영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한편, 사업주들을 각 사회보험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건설업자가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건설업체의 사회보험료 확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사회보험료 왜 확보 안 되나

현재 건설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주된 요인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이다. 이 규정은 일용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계상하지 말 것을 발주자에게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발주자가 사전적으로 그 비율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아무리 정교한 통계 자료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사 종류와 규모 등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 근로자의 비율을 단일한 평균 비율로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합리적인 발주자라도 모든 건설 사업주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정 사회보험료를 계상하기는 불가능하다.

대표적 공공 발주자인 조달청이 2005년에 반영하는 양 보험의 보험 요율은 각각 2.41%와 1.25%이다. 사업주의 몫인 4.5%와 2.15%에 비해 약 53.5%와 58.0% 수준을

계상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규모 현장 일수록 1개월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져 당해 현장의 건설 사업주는 사회보험료 부족을 호소하게 된다.

둘째,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는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규모별로 0.1~0.7%까지 요율이 차등화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발주자의 적정 계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발주자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규모의 건설업체가 수행할지 사전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주자는 요율을 보수적으로 상정할 수밖에 없고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사회보험료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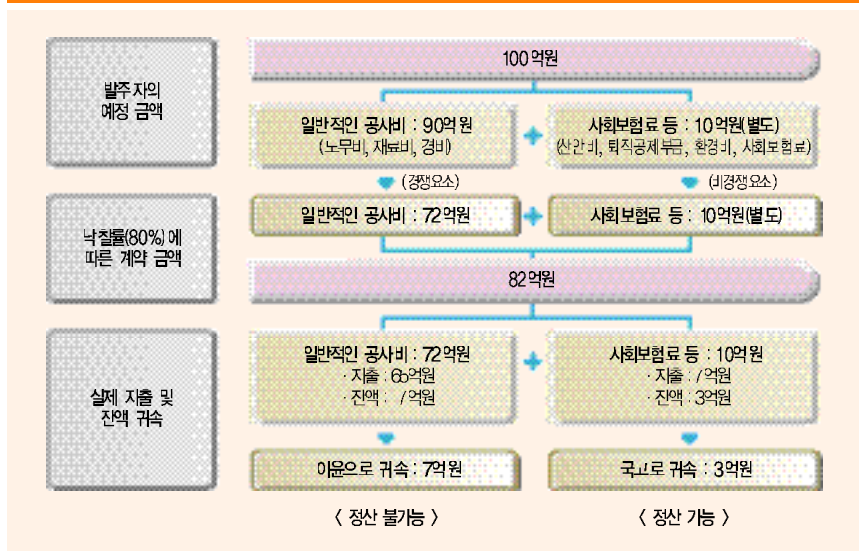
셋째, 건설 공사의 낙찰률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사회보험료마저 비례적으로 낮아지는 데서 사회보험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건설업체 사업주는 낙찰률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실제 임금에 기초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건설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건설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적용 기준 전환(예시)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	보험 요율	당해 공사의 총 공사 금액 기준
150인 미만 기업	0.1%	150억원 미만 공사
150인 이상우선 지원 대상 기업	0.3%	150억원 이상우선 지원 대상 공사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0.5%	15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공사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및 지자체의 직접 사업	0.7%	1,000억원 이상 공사, 국가 및 지자체의 직접 사업

사회보험료의 별도 계상 및 사후 정산 추진 방안(예시)



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확보 방안이 결코 국고의 낭비를 초래하거나 단지 사업주의 주머니를 부풀리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보험료의 계상 및 사후 정산을 기본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연금·건강보험료, 잔액 계상 및 사후 정산

단기적으로는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1개월 미만 일하는 일용 근로자의 비율에 대한 적절한 통계를 도출하고 이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아무리 정확한 비율을 제시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평균에 불과하므로 모든 건설 사업주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위 그림에서와 같이 국민연금 4.5%와 건강보험 2.155% 잔액을 별도로 계상하고 사후적인 정산 규정을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사후에 정산한다는 의미는 원수급자 및 하수급자 등 각 건설 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각 공단에 납부하고 공단에서 발급한 영수증에 기초하여 자신이 받은 사회보험료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한다는 의미이다. 건설 사업주 입장

에서는 실비 정산이 가장 바람직스러우나 보다 현실적인 정산 방법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환경관리비 등과 유사하게 과다 지급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는 것이다. 정산을 통해 과다 지급분을 반납하도록 하는 대신 각 사회보험료를 최대한 원가에 반영하고 낙찰률과 별도로 계상한다면 실시 정산과 유사한 확보 효과를 내게 될 것이다.

고용보험료, 총 공사 금액 기준으로 전환

자신이 발주하는 당해 공사의 총 공사 금액을 확실히 알고 있는 발주자가 보다 쉽게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계상할 수 있도록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당해 공사의 총 공사 금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를 공사 금액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노동부 장관이 발표하는 평균 임금과 노무 비율을 활용하면 된다. 이처럼 건설 공사에 대한 적용 기준을 총 공사 금액으로 적용한 예를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 기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낙찰률과 무관하게 별도 계상·사후 정산

비정상적인 낙찰률 하에서도 사회보험료

원가 계상의 취지를 그대로 살리는 한편 국고의 낭비나 사업주의 이윤 부풀리기라는 비판을 아울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회보험료를 별도로 계상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안이다.

물론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 사업주가 모든 것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사회보험료를 기입하고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관행이 정착되기까지 손놓고 기다리다가는 건설 현장의 사회보험 적용을 위해 이제 막 싹을 틔워보려는 고용보험의 전자 카드마저 고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내 건설 시장의 경우 사회보험료 금액의 크기를 결정짓는 노무비가 각 사업주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표준품셈과 대한건설협회의 직종별 평균 임금 자료에 의해 제한된다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실제 임금과 사회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으로는 먼저, 회계예규에 사회보험료는 공사비와 별도로 계상해 비경쟁 요소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각 사회보험법에 공단에서 발급한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표기된 금액이 계약 금액에 반영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 잔액을 반납한다는 내용의 정산 규정을 두며, 조달청 특수조건 등에도 다른 용도로의 전용 금지 및 감액 조치한다는 내용과 함께 사회보험료 등의 잔액을 원가에 계상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같이 건설업체의 사회보험료 확보 여건을 조성한다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라는 사회보험료 반영 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면서도 아울러 건설 사업주들이 범법자가 되는 불행한 사태를 충분히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gbsim@cerik.re.kr